

의안번호	2213047
의 퇴 인	서지영 의원
회 답 일	2026. 1. 5.
추계번호	25A4914
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7조의3 (전기요금의 경감)	① 전기판매사업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전기요금 경감 등 필요한 지 원을 할 수 있음 ②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 른 전기요금 경감 등 지원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지원대 상자에 대한 전기요금 경감 등 지원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음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범위, 지원의 내용,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령으로 정함	재량규정
2	안 제49조제4호의2 (기금의 사용)	4의2. 제17조의3에 따른 전기요금 경감 지원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등 근거 규정
1	안 제17조의3 (전기요금의 경감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 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49조제4호의2 (기금의 사용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 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전기판매사업자가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 경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, 그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내용임
 -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장애인, 국가유공자,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에 전기요금을 감면하고 있고,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감면금액의 합계는 54억 4,100만원임
 - 복지제도에 따른 장애인, 국가유공자 등의 전기요금 감면은 현재 한국전력공사의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으며,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사용되고 있지 않음
- * [참고자료] 전기요금 감면 대상, 금액, 근거법률

[표 1] 전기요금 감면 추이(2021~2025년)

(단위: 억원)

구분	2021	2022	2023	2024	2025 (~'25.9월)
감면액	5,835	6,800	6,770	6,815	5,441

자료: 한국전력공사

- 개정안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을 감면하고 해당 금액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충당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신규 전기요금 감면 대상과 감면 금액이 될 것이나, 현 시점에서 신규 요금 감면 대상 및 금액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소요 비용을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-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 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박선아	권아영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선아	02-6788-4652	sunapark@nabo.go.kr

[참고자료] 전기요금 감면 대상, 금액, 근거법률

[표] 전기요금 감면대상 및 감면금액

구 분	계약종별		감면내용(한도)		감면금액 (‘25.1~9월)
			기존	개정('16.12)	
장 애 인	주택용		월 8천원 한도	월 16천원 한도 (하계 2만원 한도)	930
상이유공	주택용				9
독립유공	주택용				10
기초생활 수 급 자	주택용	생계 의료	월 8천원 한도	월 16천원 한도 (하계 2만원 한도)	1,515
		주거 교육	월 4천원 한도	월 10천원 한도 (하계 12천원 한도)	326
	심 야		감 31.4%, 을 20%		45
	차상위 계 층	주택용		월 2천원 한도	월 8천원 한도 (하계 1만원 한도)
심 야		감 29.7%,을 18%			
3자녀 이 상	주택용		20% (월 12천원 한도)	30% (월 16천원 한도)	606
대가족	주택용		1단계 낮은 요율 (월 12천원 한도)		202
출산가구	주택용		—		627
사회복지 시 설	일반용		20%	30%	991
	주택용		21.6%		
	심 야		감 31.4%, 을 20%		
생명유지	주택용		1단계 낮은 요율 (월 12천원 한도)	30%	45
총 계					5,441

자료: 한국전력공사

[표] 전기요금 근거법률, 제도, 감면금액

관련법 조문		기본공급약관상 복지할인제도	감면금액
제17조의3 제1호 「장애인복지법」		약관 제67조 제6항 제2호 가목 (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)	월 16천원 한도 (하계 2만원 한도)
제17조의3 제2호 「국가유공자법」		약관 제67조 제6항 제2호 나목 (국가유공자법 근거 1~3급 상이자)	
제17조의3 제3호 「5.18민주유공자법」		약관 제67조 제6항 제2호 다목 (5.18민주유공자법 근거 1~3급 상이자)	
제17조의3 제4호 「독립유공자법」		약관 제67조 제6항 제2호 라목 (독립유공자 또는 권리 이전받은 유족 1인)	
제17조의3 제5호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		약관 제67조 제6항 제2호 마목 (생계·의료급여 기초수급자)	월 16천원 한도 (하계 2만원 한도)
		약관 제67조 제6항 제2호 바목 (주거·교육급여 기초수급자)	월 10천원 한도 (하계 12천원 한도)
		약관 제67조 제6항 제2호 사목 (차상위 계층)	월 8천원 한도 (하계 1만원 한도)
제17조의3 제6호 「노인복지법」		약관 제67조 제6항 제3호 (사회복지시설 복지할인)	전기요금의 30%
제17조의3 제7호 「사회복지사업법」			
제17조의3 제8호	3자녀 이상	약관 제67조 제6항 제4호 가목 (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)	전기요금의 30% (월 16천원 한도)
	만 6세 이하 미취학자녀	약관 제67조 제6항 제4호 라목 출산가구(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 영아)	
제17조의3 제9호		약관 제5조 제2항 (약관 이외의 공급조건의 적용)	특별재난지역 지원기준에 따름
—		약관 제67조 제6항 제4호 나목 (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)	전기요금의 30% (월 16천원 한도)
—		약관 제67조 제6항 제4호 다목 (생명유지장치 사용 가구)	전기요금의 30%

자료: 한국전력공사